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8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권인숙・임오경・남인순

유정주 • 윤미향 • 윤후덕

장혜영 · 정춘숙 · 이수진

아쥬(비) · 최혜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5.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고 도 같은 법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	제4조(출국의 금지) ①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치명령
	을 받고도 같은 법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u>5.</u>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4호까</u>	<u>6.</u> <u>제5호까</u>
<u>지의</u>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의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